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62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최민희 · 조인철 · 김 현
한민수 · 김우영 · 노종면
이주희 · 이해민 · 백승아
황정아 · 이훈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번호자원의 부여·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48조제1항).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자”로, “부여·회수·통합 등에”를 “부여·회수·통합,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의와 <u>전기통신사업자</u>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u>부여·회수·통합</u>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① ----- ----- -----<u>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자</u>----- ----- ----- ----- -----<u>부여·회수·통합,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